



대규모 업체·건축물, 에너지 사용 제한 사전협의 민간에 확대...연비제도 도입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나 건축물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 계획 사전협의의를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제도'를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산업체, 건축물 등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는 에너지를 일정규모(5,000TOE/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사업·시설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칠 영향분석,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 등을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위원회는 다만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임을 감안해 현재 5,000TOE/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준을 시행령 개정시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자동차 등 특별히 효율관리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도입, 기준연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과 EU등 선진국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CO₂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부과금 제도 대신 공표 및 개선명령제를 시행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제도'를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산업체, 건축물 등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에너지절약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건축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약형 건물 선택을 촉진·유도할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에 대해서만 회수·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회수·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출금리 인하 대체에너지·주택단열 자금 각 1.25%p 내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최근 에너지절약 강화책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이자를 인하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25% 대출금리로 지원되던 에너지 절약시설설치,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금리는 4.0%로 인하된다. 또 6.5%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집단에너지공급, 주택단열개수 지원사업의 금리는 5.25%로 인하된다.

정부와 공단측은 올 1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종전 5%에서 10%로 커지고, 지난 3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차례에 걸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금리 인하로 에너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 보고절차 간소화 보고서 통합 전산보고 기능... 실적평가단 구성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폐기물 감량계획이나 추진실적의 보고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 폐기물감량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통합해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보고 절차를 간소화토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업자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전산처리기구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사업자가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사업자단체로 제출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 전산처리 기구



에 제출토록 했다. 전산처리기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소음·진동규제 개선키로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환경개선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비효율적 규제는 정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효율 제거를 위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신설·강화규제 심사의뢰시 규제총량제 원칙에 따라 폐지규제를 의무적으로 상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의 신설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관련 유사중복성 규제개선, 소음·진동측정 규제개선등 특정과제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제도도 지역특성, 실제발생률 등을 고려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규제는 폐지토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고시·훈령등 하위규정제·개정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환경개선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비효율적 규제는 정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효율 제거를 위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시, 수질정화시설 부레옥잠무상분양

경기도 평택시는 수질 정화 식물인 부레옥잠을 무상 분양한다.

열대성 수생식물로 연과 같이 물위에 떠서 자라며 잎자루 모양이 부레처럼 부풀어 있어 이름이 붙여진 부레옥잠은 9~10월 자주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며 공원 연못 등에 수중 관상초로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

가정의 조그마한 수조나 어항속에 기르면 늘 푸른색을 볼 수 있고 정원, 연못 등 친수공간에 심어 전원적인 도심풍경을 연출할 수도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오염된 저수지 등에 심을 경우 질소·인 등의 함유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을 원하는 업체나 가정은 평택시 환경보호과(☎ <031>659-5243,

4343)로 연락하면 된다.

**수변구역·총량관리 전국 확대 추진
사전 오염예방 강화**

상수원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과 오염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1일 환경부는 향후 물관리 정책과 관련, 사전오염예방대책을 강화키로 하고 광역상수원 인접지역의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강수계의 경우 99년 9월부터 팔당상수원 인접지역 255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대강에 대해서도 특별법 입법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과 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하고 질소·인 고도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질환경기준을 현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의 지표에서 생물학적 지표 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하천이나 호수를 생물종의 서식이나 다양성 여부로 평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오염사고나 수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역단위의 수질정책을 펼치기로 하고, 배출허용기준에서 배출허가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관리가 가능토록 배출총량에 대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이 설치·운영되는 형



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수질개선 대책 수립 시 하천유지수량을 늘리는 등 적정수량 확보대책을 동시에 고려, 댐의 연계운영 및 관련기구의 일원화 등을 포함한 수량과 수질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하·폐수처리장 6곳 적발

울산·경남지역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하·폐수 및 분뇨처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이들지역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 50곳의 환경기초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6곳의 환경오염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낙동강환경청은 적발된 6곳의 처리장중 울산 여천분뇨처리장 등 4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거창 정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등 2곳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울산 여천분뇨처리장의 경우 총질소(T-N)가 85.335mg/l로 방류수 수질기준인 60mg/l을 초과했으며 양산지 방산업단지와 함안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각각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관련 방류수 수질기준(BOD 30 mg/l COD 40mg/l)을 초과했다.

또 마산·창원 하수종말처리장도 BOD와 부유물질(SS)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거창정장농공단지와 함천읍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환경관련 부담금 연면 금융거래 제한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 개선부담금 등 5가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

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1년 제정됐으며, 배출부과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지난 83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또 폐기물예치금은 회수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 비용을 예치하게 한 뒤 회수가 제대로 됐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며,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의 제조업자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로 먹는 샘물 판매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 97년까지 87%를 웃돌다가 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지는 등 채납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적인 채납으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율환경관리제 도입 시행

부산시는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 목표와 개선계획을 작성, 연차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인 자율환경관리제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예비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대해 부산시와 기업간의 자율환경관리계약 체결한 뒤 3개월 이내에 기업들이 자체



환경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확정된 목표 및 연도별 투자 등 환경관련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연 4차례 이상의 정기점검을 연 1회 환경진단으로 줄이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및 환경친화기업 신청시 우선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2003년부터는 자율환경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총질소와 총인 등을 포함시키고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장 악취 발생 정신평해 첫 인정

농약냄새 피해 본 주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 결정농약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냄새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소재 농약제조공장인 I사에서 농약 유출사고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 악취피해를 준

환경부는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비 배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사전기술검토를 실시기로 했다.

지난 11월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시설용량 위주로 계획돼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체계를 이같이 개선기로 했다.

점을 인정, 19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9,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지금까지 소음진동이나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이 많았지만 공장의 악취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배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감독기관인 충북도에 대해 해당 공장의 악취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철거하는 한편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조치도 내렸다.

환경부, 폐수처리장 사업체계 개선

환경부는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비 배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시설용량 위주로 계획돼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체계를 이같이 개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년 지자체가 제출하는 폐수처리장 설치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과다시설증설,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을 해소키로 하고 연내 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지침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환경평가사 수험서 판매
환경평가사 자격시험특강 접수
 문의 및 접수 : 전국환경관리연합회, (02)852-2291